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5627 지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049,860원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338,6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 '2020. 2. 5.'은 청구원인 및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redacted]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2018. 5. 14. 2016년도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3,355,400원을, 2019. 6. 13. 2016년 1월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160,4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각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자 2016년 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고 2020. 2. 10. 원고에게 가산금을 포함하여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049,860원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338,6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는 설립 당시부터 D이고, 원고는 과거 고용주로서 도움을 주었던 D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바로 잡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9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등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갑 제9, 13, 14, 18, 24, 26,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북[redacted]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9

① D은 2016년 5월경 4,000만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E, F의 명의를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F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E과 F는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전산직원 및 총무)으로 근무한 자들인 반면, D은 유사 업종의 다수 업체들을 설립하여 운영해온 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② 원고도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D에게 고용되어 'G'라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D을 알게 된 후 원고가 투자를 하고 D이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것은 D이었다. 더구나 D에게 고용되어 월 350만 원을 받던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불과 5개월이 지나 수천 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D 사이에 실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거나 주식매매대금이 오고 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도 하였으나, D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던 E도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D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표 명의를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두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북[redacted]세무서장은 2019. 11.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2016년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9

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식회사의 경영과 소유가 엄격히 분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0% 주식을 보유한 원고가 약 4년 동안 주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⑤ 북[redacted]세무서장은 2020. 9. 16.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가 그 납세의무 성립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그 과세처분에 불복하자 2021. 3. 25.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0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